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1회 임시회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5. 4.

운 영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4.
운영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도하석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5. 4. 9.(수)
- 회부일자: 2025. 4. 9.(수)
- 검토기간: 2025. 4. 10.(목) - 2025. 4. 17.(목)

## 2. 개정이유

-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,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방식과 소위원회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 또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(안 제5조제2항)
- 나.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다.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의 경우 최다선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하도록 명시함(안 제8조제2항)
- 라.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12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춰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안 제5조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 또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, 안 제6조는 상임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, 안 제8조는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출 시 최다선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하고, 안 제12조는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)을 명시함.
-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「국회법」 제57조제1항은 필요한 경우 안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제4항은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. 또한 위원회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대구광역시 내 중구의회를 제외하고, 대구광역시의회를 포함하여 8개 기초의회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함.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